

# 제19대 대통령선거 관련, 공직선거 행위제한 기준

## ① 상시제한

주 체	내 용	근 거
공무원 등 정치적 중립 의무자	·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· 직무 관련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	§9 §85①
공무원	· 선거운동,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	§60① §85②
공무원 등*	· 소속직원·선거구민에게 명목여하 불문하고 특정 정당·후보자(퇴고자 하는자 포함)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·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기획참여 및 기획의 실시에 관여 · 정당·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 조사·발표	§86① 1~3호
단체장	· 소관사무나 명목여하 불문, 방송·신문·잡지·광고 출연	§86⑦
누구든지	· 교육적, 종교적, 직업적 관계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	§85③④
	· 후보자(퇴고자 하는자 포함)의 선거운동을 위한 연구소·동우회·향우회·산악회·축구회·정당 외곽단체 등 명칭·목적 불문하고 사조직 기타 단체 설립	§87②
	· 선거사무소(연락소)외 후보자(퇴고자 하는자 포함)를 위한 선거추진위원회·후원회·연구소 등 명칭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·단체의 설립 및 시설 이용 ※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설치되는 1개의 선거대책기구 및 「정치자금법」에 의한 후원회 제외	§89①

\* 공무원(국회의원, 그 보좌관·비서관·지방의회의원 제외), 선상투표 실시 선박의 선장, 정부보유 지분 50/100 이상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·공단 상근 임·직원, 통·리·반장, 주민자치위원,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,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·새마을운동협의회·한국자유총연맹 상근 임·직원 등

## ② 선거일 전 60일부터 제한

주 체	내 용	근 거
단체장	· 정당의 정강·정책, 주의·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·선전 ※ 해당단체장 선거의 예비후보자·후보자인 경우는 가능 · 정당의 창당·합당·개편·후보자 선출대회를 제외하고는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 강연회, 정견·정책발표회, 당원연수·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 참석, 선거 대책기구·선거사무소·선거연락소 방문 ※ 해당 단체장 선거의 예비후보자·후보자인 경우, 당원으로서 소속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인 방문은 가능	§86② 2~3호
	· 통·리·반장회의 참석(천재·지변·재해, 집단·긴급민원 발생 시 참석가능)	§86②5호
단체장 (소속공무원)	· 교양강좌, 사업설명회, 공청회, 직능단체모임, 체육대회, 경로행사, 민원상담, 기타 각종 행사 개최·후원	§86②4호

**가능한 행위**(법 §86②4호, 규칙 §47②)

- 법령에 의해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를 개최·후원하는 경우
- 특정일, 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
- 천재, 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·복구를 위한 행위
- 집단민원 또는 긴급 민원 발생시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
- 국가 유공자 위령제, 국경일 기념식,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시행하는 기념행사의 개최·후원 등

**③ 선거기간 중 제한**

주 체	내 용	근 거
<b>공무원 등</b>	·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않을 사업의 기공식 거행 · 정상적 업무 외의 출장 · 휴가기간에 업무와 관련된 기관·시설 방문	§86① 5~7호
	·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상회 개최	§103④
<b>누구든지</b>	·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,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연설·대담·토론회를 제외한 기타 연설회(개인정견발표, 시국강연회, 좌담회 등)	§101
	·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향우회·종친회·동창회·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·모임의 개최	§103③